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예산안

검 토 보 고

I.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해당 사항 없음.

2. 세출예산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2019년 세출예산은 4억 2천 4백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4억 4백만원 대비 4.9% 증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

구 분	2018년도 당초예산	2019년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404,346	424,219	19,873	4.9%	
일반회계	소 계	404,346	424,219	19,873	4.9%
	사업비	260,762	287,623	26,861	10.3%
	행정운영경비	143,584	136,596	△6,988	△4.9%

(단위 : 백만원, %)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 초	최종		증감	비율
합 계	404	404	424	20	5.0
사업예산(계)	260	260	287	27	10.4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 보호 증진	260	260	287	27	10.4
고충 및 생활민원의 적극적 해소	55	55	65	10	18.1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44	44	47	3	6.8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11	11	18	7	63.6
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	111	111	111	0	0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32	32	32	0	0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9	79	79	0	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94	94	111	17	18.1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8 예산		2019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94	94	111	17	18.1
행정운영경비(계)	144	144	137	△7	△4.9
기본경비	144	144	137	△7	△4.9

○ 2019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18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천원, %)

정책	단위	세부	예산과목	2018년 당초예산	2019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편성목-통계목				
			합계	404,346	424,219	19,873	4.9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260,762	287,623	26,861	10.3
			고충 및 생활민원의 적극적 해소	55,244	64,744	9,500	17.2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44,100	46,600	2,500	5.7
			사무관리비	23,100	25,600	2,500	10.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1,000	21,000	-	-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11,144	18,144	7,000	62.8
			사무관리비	1,144	1,144	-	-
			포상금	10,000	17,000	7,000	70.0
			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	111,100	111,100	-	-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32,100	32,100	-	-
			사무관리비	16,100	16,100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6,000	16,000	-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9,000	79,000	-	-
			사무관리비	67,000	67,000	-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000	12,000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94,418	111,779	17,361	18.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94,418	111,779	17,361	18.4
			기간제근로자보수	6,658	6,859	201	3.0
			사무관리비	44,200	48,000	3,800	8.6
			국외업무여비	10,000	25,000	15,000	150
			특정업무경비	30,960	31,920	960	3.1
			기타보상금	2,600	-	△2,600	△100
			행정운영경비	143,584	136,596	△6,988	△4.9
			기본경비	143,584	136,596	△6,988	△4.9
			사무관리비	89,472	90,936	1,464	1.6
			국내여비	48,832	40,320	△8,512	△17.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80	5,340	60	1.1

II. 검토의견

1. 세출예산 검토

- 2019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4천7백만원),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1천8백만원),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3천2백만원),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7천9백만원),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1억1천1백만원) 등 총 6개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2억8천7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3천7백만원 등으로 전년(4억4백만원) 대비 4.9% 증액한 4억2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가. 고충민원 적극적 조사·처리

- 고충민원 직접조사 및 처리체계 강화를 통해 시민의 권리구제 및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4천4백만원) 대비 5.6%(250만원) 감액한 4천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44,100	(x-) 44,100	(x-) 46,600	(x-) 2,500	(x-) 5.6
사무관리비	(x-) 23,100	(x-) 23,100	(x-) 25,600	(x-) 2,500	(x-) 10.8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21,000	(x-) 21,000	(x-) 21,000	(x-) 0	(x-) 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2,500천원 - 강사료 350,000원*2명*1회 = 700천원 - 교재비 6,000원*300부*1회 = 1,800천원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5,000천원 - 강사료 350,000원*2명*2회 = 1,400천원 - 교재비 6,000원*300부*2회 = 3,600천원
	○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 3,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50,000원*1명*12회 = 1,800천원 - 자료검토수당 100,000원*1명*12회 = 1,200천원	○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 3,0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50,000원*1명*12회 = 1,800천원 - 자료검토수당 100,000원*1명*12회 = 1,200천원
	○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 17,600천원 - 외부배심원 회의참석수당 150,000원*4명*16회 = 9,600천원 - 외부배심원 자료검토수당 100,000원*4명*16회 = 6,400천원 - 주배심수당 100,000원*1명*16회 = 1,600천원	○ 민원배심법정 운영 = 17,600천원 - 회의참석수당 150,000원*4명*16회 = 9,600천원 - 자료검토수당 100,000원*4명*16회 = 6,400천원 - 대표배심원 수당 100,000원*1명*16회 = 1,600천원
	증감사유	
	- 남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고충민원 역량강화 교육 확대 (연 1회 → 연 2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고충민원 조사활동 업무추진 = 14,000천원 ○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 = 7,000천원	○ 고충민원 조사활동 업무추진 = 14,000천원 ○ 민원배심법정 운영 = 7,000천원
	증감사유	
	- 해당사항 없음	

- 사무관리비의 세부 증감 사유를 살펴보면,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으로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확대(1회→2회)로 인한 교육비는 증액 (250만원→500만원)한 것이나, 동 교육의 2017년 집행률은 74.0%이고, 2018년 10월 말 기준, 동 예산의 집행실적은 전무한 상황임.
- 고충민원의 신속·공정한 처리 등 직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는 절실히 필요하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연말에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민원배심법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시민 홍보 및 의제 발굴 등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민원배심법정 접수 내역 및 개최 내역 >

- 민원배심법정 접수 내역		(2018. 9월 현재, 단위: 건)			
연도별	계	2018	2017	2016	
접수 안건수	29	9	12	8	
회의개최 횟수	54	15	24	15	
- 민원배심법정 개최 내역		(단위: 건, '18.9월말)			
연도별	총 안건수	인 용	일부인용	조정·중재	기각
계	29	11	7	3	8
2018	9	3	2	1	3
2017	12	6	1	1	4
2016	8	2	4	1	1

자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273페이지

- 또한,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항목은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현장 중심 민원 서비스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2017년에는 집행실적이 전무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9월 말 기준 10%(30만원)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바,

- 현장 중심 민원 해소를 위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2019년에도 2018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편성하고 있는바, 적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액		집행내역	비고
	계	산출기초		
2018	23,100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2,500	0
		-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3,000	300
		- 민원조정 중재제도 운영	17,600	12,513
2017	24,164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5,000	3,703
		-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6,064	0
		- 민원조정 중재제도 운영	13,100	13,497
2016	19,664	- 고충민원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5,064	3,778
		- 찾아가는 고충민원서비스 운영	6,600	0
		- 고충민원 및 시민·주민감사 직무 워크숍	8,000	7,725

나. 생활민원 점검체계 강화

- 본 사업은 시민불편사항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시정을 위해 시민 및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시민 및 직원포창을 위한 ‘사무관리비’(114만원)와 우수기관 및 자치구 ‘포상금’(1천7백만원)으로, 1천8백만원의 예산(전년 예산 1천1백만원 대비 62.8%)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1,144	11,144	18,144	7,000	62.8
사무관리비	1,144	1,144	1,144	0	0
포상금	10,000	10,000	17,000	7,000	70.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포창장 제작 구매 5,500원*117조 = 644천원	○ 포창장 제작 구매 5,500원*117조 = 644천원
	○ 현장점검 물품구입 100,000원*5점 = 500천원	○ 현장점검 물품구입 100,000원*5점 = 500천원
	증감사유	
	- 해당사항 없음	
포상금	○ 우수기관 및 자치구 포상 = 10,000천원 - 우수기관 포상 1,000,000원*3개 기관 = 3,000천원 - 우수자치구 포상 1,000,000원*7개 자치구 = 7,000천원	○ 우수기관 및 자치구 포상 = 17,000천원 - 우수기관 포상 1,000,000원*3개 기관 = 3,000천원 - 우수자치구 포상 2,000,000원*7개 자치구 = 14,000천원
	증감사유	
	- 우수 자치구 대상 포상금 100만원 → 200만원으로 확대	

○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 중 현장점검을 위한 물품구입비는 매년 50만원 (100,000원*5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18년에는 9월 말 기준 전액 미집행하였으며, 2017년에는 현장점검 물품으로 안전화 18만원을 구입하고 나머지(32만원)는 다과비 등에 사용하였음.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천원)	집행액	집행계획 또는 집행내역	비고
2017년	803 -포창장 303 -현장점검물품 500	803	· <u>현장민원 점검관련 물품(안전화) 180</u> · <u>자치구 운영실적 평가위원회 다과 74</u> · 포창장 제작 구매 549	

- 또한, 동 사업의 ‘포상금’은 시민불편사항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시정을 위해 우수시민 및 직원을 포상하려는 것으로, 전년 예산(1천만원) 대비 70% 증액한 1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포상금’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포상금을 편성할 경우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서 ‘포상금’ 예산이 필요할 경우 조례 개정 등의 근거 마련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편 성 목	설 정 (통 계 목 포 함)
303 포상금	<p>01. 포상금</p> <p>1. 모범공무원 <u>산업시찰</u> 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나. 배우자를 동반할 경우 배우자에 대한 산업시찰경비</p> <p>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p> <p>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p> <p>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p> <p>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 (단,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한 경우 포함)</p>

- 한편, 서울시에서 자치구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민원배심법정 상정 등에 대해서는 자치구 길들이기식 사업이 아닌 법적인 권한과 근거가 우선되어야 하는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4년간 응답소 현장민원 관련 포상금 지급내역 〉

연도	구분	기관명	포상금
2017	시·사업소 우수부서	'17.11월 평가 완료 후 시,사업소 우수부서 3개 선정(예정)	3백만원 (각 1백만원)
	우수 자치구	'17.11월 평가 완료 후 우수 자치구 7개 선정	7백만원 (각 1백만원)
2016	상·사업소 우수부서	대기관리과, 서부수도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3백만원 (각 1백만원)
	우수 자치구	은평구, 강북구, 양천구	3백만원 (각 1백만원)
2015년	최우수	대기관리과	2백만원
	우 수	서부수도사업소, 동부도로사업소, 시민봉사담당관, 보도환경개선과	4백만원 (각 1백만원)
2014년	최우수	친환경교통과	2백만원
	우 수	보도환경개선과, 서부수도사업소, 대기환경연구부, 도로관리과	4백만원 (각 1백만원)

- 예산편성 잠정기준 등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를 행정경비의 일종으로, 사업수행부서의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 분류하고 있음.
- 본 통계목이 경상적·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사무관리비' 예산을 편성할 경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실소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관행적,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야 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사무관리비' 편성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다.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 본 사업은 감사·조사 활동에 외부전문가, 시민 등의 참여로 감사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청구심의회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32,100	(x-) 32,100	(x-) 32,100	(x-) 0	(x-) 0
사무관리비	(x-) 16,100	(x-) 16,100	(x-) 16,100	(x-) 0	(x-)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x-) 16,000	(x-) 16,000	(x-) 16,000	(x-) 0	(x-) 0

- 감사청구심의회는 주민 감사 청구 시, 청구 요건 심사 및 청구인 명부의 유효서명 등의 확인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회의 운영실적과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인원 : 11명(외부 9명, 내부 2명), 임기 2년(1차 연임 가능) -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감사 청구 요건의 심사 · 주민감사 청구인 명부에 적힌 유효서명 확인 ·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등
--

〈감사청구심의회 예산 집행 실적〉 (단위: 천원, '18.9월말)

연도	예산과목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	비고
201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 감사 활성화 및 시민권익보호 증진, 시민참여감사로 투명성 제고,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11,100	3,250
2017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활동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7,500	7,900
2016	감사위원회 민원해소담당관,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적극적 민원처리로 시민고충민원 처리수준 향상,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6,000	7,500

〈감사청구심의회 운영〉

연도	회의 운영 내역				
	회차	회의일시	회의안건	참석자	처리결과
2018	1	3. 23.	○ 2016·2017년 강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수리
	2	6. 7.	○ 송파구 석촌시장 LED교체공사 보조금 집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수리
			○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용역 입찰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각하
	3	9. 14.	○ 동작구 동작대로 문화거리조성사업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각하
○ 20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수리	
2017	1	1. 18.	○ 마포구 '아현포차' 행정대집행 절차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정재실 부위원장 외 6	수리
	2	4. 8.	○ 구로구 오류시장 정비사업 추진절차 부적정 및 공무원 횡포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수리
	3	4. 27.	○ 동작구 이수역 주변 노점상 강제철거과정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수리
	4	4. 27.	○ 2016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외유성 성격과 표절문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수리
			○ 강동구 길동 우성2차아파트 주차장 입구 불법영업 노점상의 지속적인 민원과 진정에 대한 강동구청의 직무유기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각하
	5	11. 8.	○ 2016년 상반기 서초구의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외유성 성격과 표절문제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5	수리
6	12. 6.	○ 관악구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 차등지원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수리	
2016	1	3. 3.	○ 강동구 고덕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임종빈 부위원장 외 5	결정보류
	2	4. 27.	○ 강동구 고덕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각하
			○ 관악구의회 해외비교시찰 예산집행 관련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7	수리
	3	6. 28.	○ 노원구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관련 용도변경허가 등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각하
4	10. 7.	○ 강남구 일원동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수리	

연도	회의 운영 내역				
	회차	회의일시	회의안건	참석자	처리결과
	5	10. 28.	○ 강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용역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6	수리
			○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민원해결 적법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인명부 서명 이의신청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5	심의 연기
			○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민원해결 적법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5	심의 연기
			○ 용산구 서빙고동 4-16일대 신축 관련 위법 부당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5	수리
	6	11. 17.	○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민원해결 적법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인명부 서명 이의신청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5	이유없음
			○ 종로구 무악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감독 및 민원해결 적법성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건	김선중 위원장 외 5	수리

- 동 사업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 사업비(3천2백만원) 대비 50%(1천6백만원)에 가까운바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마.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

- 본 사업은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청렴계약 이행 여부를 감시·평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이 7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79,000	(x-) 79,000	(x-) 79,000	(x-) 0	(x-) 0
사무관리비	(x-) 67,000	(x-) 67,000	(x-) 67,000	(x-) 0	(x-) 0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12,000	(x-) 12,000	(x-) 12,000	(x-) 0	(x-) 0

〈세부 산출 기초〉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150,000원*35명*8회 = 42,000천원	○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150,000원*35명*8회 = 42,0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150,000원*35명*4회 = 21,000천원	○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150,000원*35명*4회 = 21,000천원
	○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 2,000,000원*2회 = 4,000천원	○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 2,000,000원*2회 = 4,000천원
	증감사유	
- 해당사항 없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 12,000천원	○ 공공사업 현장 감시활동 업무추진 = 12,000천원
	증감사유	
	- 해당사항 없음	

- 동 사업은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시에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입회하여 청렴계약 이행 여부를 감시·평가하는 사업으로,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4천2백만원),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4회, 2천1백만원),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2회, 4백만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재 시민참여옴부즈만은 33명이나, 35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감사옴부즈만 7명 - 시민참여옴부즈만 35명 구성(위촉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분야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복지, 도시안전 등 6개 분야 전문가로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 대상기관
 - 시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 사무위탁기관(위탁사무) 및 보조금 수령기관
- 대상사업
 -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의 공사
 - 5억원 이상의 용역 및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 그밖에 감시·평가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 활동내용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활동 및 부조리 사항 발견 시 감사 추진
 - 시정참여를 통해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자문역할
 - 시민감사·참여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 추진: 연 2회

- 4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바와 같이 참여실적이 전무한 옴부즈만(3명)과 참여 실적이 저조한 옴부즈만이 있는 등 위원마다 참여 실적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시민참여옴부즈만이 남성, 고연령으로 편중 운영되는 등 미비점이 나타났는바,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충실한 사업 집행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4년간 공공사업 현장감시활동 수당 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집행률)	비고(건수)
2018 (10월말)	42,000	29,400(70%)	196건
2017	42,000	37,200(88.5%)	248건
2016	42,000	25,600(60.9%)	171건
2015	24,150	17,400(72.0%)	116건

- 동 사업의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4회)와 시민참여옴부즈만 워크숍(2회)은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 옴부즈만 위촉 등에 따라 사업 예산의 증감이 필요하나, 매년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성실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공공사업 감시활동 평가 토론회 집행내역〉

(단위: 천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집행률)	비고
2019년 편성액	21,000	-	
2018 (9월말)	21,000	11,700(44.2%)	
2017	21,000	6,209(70.4%)	

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역량강화 및 선진화

- 본 사업은 출범 3주년을 맞이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옴부즈만과 조사관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4천8백만원), '국외업무여비'(2천5백만원), '특정업무경비'(3천1백만원) 등 전년(9천4백만원) 대비 18.3% 증액한 1억 1천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편성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B-A)*100/ 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94,418	94,418	111,779	17,361	18.3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6,658	6,658	6,859	201	3
사무관리비	44,200	44,200	48,000	3,800	8
국외업무여비	10,000	10,000	25,000	15,000	150
특정업무경비	30,960	30,960	31,920	960	3
기타보상금	2,600	2,600	0	△2,600	△100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5,000,000원*2명 = 10,000천원	5,000,000원*5명 = 25,000천원
	증감사유	
	-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증액(2명→5명)	

- 주요 증액 내용은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880만원,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교류 및 견학의 원활한 추진”(2명 ⇒ 5명)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1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서울특별시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동 회기에 제출되어(2018.10.17.) 있어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2018.10.29)되어 있음.

- 시민감사옴부즈만(7명) 중 내년에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옴부즈만을 신규로 채용하게 됨에 따라 신입 옴부즈만이 해외 옴부즈만 운영사례 등을 시찰할 수 있도록 편성한 것으로 보임.

〈2019년 임기 만료 예정인 시민감사옴부즈만 현황〉

직위	성명	임용기간
위원장	정기창	2016.2.23. ~ 2019.2.22.
위원	김경희	2016.2.23. ~ 2019.2.22.
위원	박진영	2016.5.24. ~ 2019.5.23.
위원	장정욱	2016.7.1. ~ 2019.6.30.
위원	김선주	2016.8.9. ~ 2019.8.8.
위원	조웅길	2016.8.23. ~ 2019.8.22.

-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시민감사옴즈만을 공무원으로 채용시 관련 법령(「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서울시 인사규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거쳐 책임자가 선발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동 사업 중 신임 옴부즈만 채용에 따른 ‘국외업무여비’의 150% 증액 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해외 옴부즈만 우수사례 교류 및 견학〉

(단위: 천원, '18.10월 현재)

연도별	여행국	기간	출장자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18	미국, 캐나다	'18.10.13.(토) ~10.20.(토)	박진영, 장정욱	10,000 (2명*5,000)	7,900	
2017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17.09.09.(토) ~09.16.(토)	김경희, 정진우	10,000 (2명*5,000)	8,177	
2016	호주, 뉴질랜드	'16.11.01.(화) ~11.08.(화)	윤천원, 서승표	10,000 (2명*5,000)	5,326	

의사지원팀장 : 박희숙
입법조사관 : 신정희